

##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3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4. 9.

제 출 자 : 종로구청장

### 1. 개정이유

환경개선을 통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고,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골자

가.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점용료 산정기준표 신설

- 구청장이 시장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정·공고·고시한 재래시장의 차양시설·비가리개 시설·기타 이와 유사한 것 : 토지가격에 0.0001을 곱한 금액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

- 1)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(점용료의 산정기준)제2항
- 2) 재시84000-74(서울시, 2003. 3. 10)호와 관련 사항임
- 3) 도관58710-426(건설교통부, 2001. 5. 9)호와 관련임

나. 예산조치 : 비예산사업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

**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**

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의 점용물의 종류란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, "제1호 내지 제9호"를 "제1호 내지 제10호"로 하며,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점 용 물 의 종 류	기 준 단 위		점 용 료 (단위:원)
	점용단위	기간단위	
10. 구청장이 시장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정·공고·고시한 재래시장의 차양시설·비가리개 시설·기타 이와 유사한 것	점용면적 1㎡	1년	토지가격에 0.0001을 곱한 금액
11. 제1호 내지 제10호 외의 공작물·물건 및 시설	농업 및 식물재배	점용면적 1㎡	토지가격에 0.01을 곱한 금액
	주 백		토지가격에 0.025를 곱한 금액
	기 타		토지가격에 0.5를 곱한 금액

**부 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물 대비표

현				행				계				정				안							
제3조(점용료의 산정기준) (생략)								제3조(점용료의 산정기준) (현행과 같음)								제3조(점용료의 산정기준) (현행과 같음)							
(별표)								(별표)								(별표)							
점용료 산정기준(제3조와 관련)								점용료 산정기준(제3조와 관련)								점용료 산정기준(제3조와 관련)							
점용물의 종류		기준단위		점 용 료 (단위:원)		점용물의 종류		기준단위		점 용 료 (단위:원)		점용물의 종류		기준단위		점 용 료 (단위:원)							
		점 용 기 간 단위	단위					점 용 단 위	기 간 단위					점 용 단 위	기 간 단위								
<신 설>																							
10. 제1호 내지 제9호의 공장·물건 및 시설		(생략)			(생략)	10. 구청장이 시장·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·공고·고시한 재래시장의 차양 시설·비가림개 시설·기타 이와 유사한 것		점용면적 1㎡	1년	토지가격에 0.0001을 곱한금액	11. 제1호 내지 제10호		(현행과 같음)			(현행과 같음)							
													(현행과 같음)			(현행과 같음)							
													(현행과 같음)			(현행과 같음)							
													(현행과 같음)			(현행과 같음)							